

성매매특별법 둘러싼 언론보도 '여성'은 없다

:: **문이정민**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기자

10월 2일 토요일 새벽.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22세의 성매매 피해여성이 자신이 거처하던 자취방에서 전기줄로 목을 매고 자살했다. 이 여성은 돈을 벌기 위해 한 안마시술소에 들어갔으나 보증채무를 지도 록 강요받고, 충격적인 성매매 행위를 강요받으며 각종 벌금을 명목으로 착취당했다. 업소를 벗어나길 간절히 원했던 이 여성은 “눈에 띄면 보이는 대로 죽여버리겠다”는 업주의 협박에 두려움에 떨다 결국 자살했다.

'착취와 폭력'에 묶인 성매매 여성에 주목

온갖 착취에 시달리던 성매매 여성이 이렇듯 업주의 협박에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 속에서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언론의 태도는 어떠한가? ‘강압적인 감금행위가 없다’, ‘성매매 여성들도 자발적으로 시위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등 시위에 나선 포주들의 입장을 아무런 논평 없이 실기 바빴으며,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성매매가 주눅타고 파고든다’거나 ‘성폭력이 늘어난다’는 식의 우려를 표명하며 여론을 호도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산업 붕괴가 도미노처럼 다른 산업의 붕괴를 가져와 관련업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통해 성매매특별법 ‘흡집 내기’에 열을 올릴 뿐이었다. 여성들이 스스로 성산업 구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빈곤한 현실, 성매매의 질긴 고리 속에서 온갖 착취와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벗어날 수 없었던 피해여성의 인권은 간단히 외면해버린 것이다.

이런 식의 보도 속에 대체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성매매’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의식마저 보이지 않는다. 성매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주눅이나 외국으로 번져나가서는 안 될 ‘더러운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다. 성매매가 ‘범죄’인 것은 피해 받는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성매매 여성들은 청소년 시기에 성 산업에 유입된다. 청소년 시기에 집을 나온 여성들은 마땅히 잘 곳도, 일할 곳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준다는 포주들의 유혹은 뿌리치기 힘든 현실이 된다.

그리고 늘어난 빛의 착취구조에 발이 묶이고, 감금상태에서 불에 타죽고 나서야 주검으로 확인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군산화재참사사건, 그리고 업주의 협박으로 인한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살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특별법, ‘포주와 알선자’ 처벌 강화

성매매특별법은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를 도덕적 잣대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피해자가 존재하는 성 산업의 구

조를 분제 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점이라면 성 산업 속에서 겪는 여성의 '피해'에 주목, 포주나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기본적인 취지마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언론은 결국 성매매를 '참을 수 없는 남성의 성욕'에 의한 '필요악'으로 정의하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각본에 기반, '성매매가 없어지면 성폭력이 늘어날 것'이라는 식의 논리까지 전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남성의 성욕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은 강간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통념일 뿐이다. 이러한 논리 속에 여성의 인권은 없다.

또한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관련 업계에 대한 우려 속에 '여자를 장사'하는 성 산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쏙 빠져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성 산업의 경제규모는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만큼 성매매 여성들을 둘러싼 착

성매매특별법이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비해 확연히 달라진 점이라면 성 산업 속에서 겪는 여성의 '피해'에 주목, 포주나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취 구조가 견고하고 거대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자를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선불금이나 각종 벌금 등으로 성 산업의 착취구조에 발이 묶인 여성들을 이용해 정작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형적인 경제구조를 용인하고 걱정할 때인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소위 '기생관광'의 수요침체를 우려하고, 일본인 바이어에 대한 성 접대가 힘들어져 '수출계약'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푸념할 때인가.

피해자인권은 무시되고 '성욕, 산업영향'역지 논리만 존재

성매매특별법은 기본적으로 '여자가 장사 한다'가 아닌 '여자를 장사 한다'는 인식전환 아래 포주나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성매매로 인해 피해 받는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인식으로부터 출발, 그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자발·비자발' 여부를 따져 성매매 여성들에게 혐의를 두기 보다는 빈곤의 구조 속에 놓인 여성의 상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지위를 인정,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다.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자체의 존재만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 언론의 중요한 역할은 '역사와 인간의 본성' 운운하며 '성매매 집중단속 문제 있다' (연합시론, 2004년 9월 24일), "사창가 없앤다고 성매매 없어지나?" (주간조선, 2004년 10월 4일) 식의 탁상공론을 내뱉거나 "숨바꼭질 윤락시대 열리나" (뉴스메이커 2004년 10월 8일), "성매매 단속 여행업계 불똥" (해럴드 경제, 2004년 10월 7일) "성매매특별법 은행도 유탄?" (한국일보, 2004년 10월 8일) 식의 성매매특별법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취지에 맞게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기능할 수 있는 방향과 대안들을 고민하고 담아내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초기인 지금, 언론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거대한 성 산업 속에 놓여있는 성매매 여성의 피해에 대해 이해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자세다.